

결 정

2018 - 4031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1월 29일자(이하 캡처시각) 「급격히 치솟는 혈당 딱! 당노 100% 완치 가능!!」 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2월 2일자 「“복용 후 30일 이면 당노, 고혈압 100% 완치!”」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 유

①국민일보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지멘스, 보이지 않은 보청기
출시로 업계 새바람
헤어닷컴



여경 집에서 관계 맺다 남편
에게 발각... 대구 '불륜 경찰'
정지훈 기자



'이방인' 선예 "결혼 응원해준
원더걸스 그림다" 울컥
진서연



부부창업.. 재택서가능? 680
만원 온라인학습지도 교육장
청담교육



탈린트"김민정"탱탱한 피부
비결은?
고훈진



대만 머슬린 제시카, '독보적
볼륨감' 시선 강탈
이현지



영하 56도 맹추위 속 울타리
넘다 그대로 얼어붙은 토끼
뉴시스



급격히 치솟는 혈당 딱! 당노
100% 완치 가능!!
클케어365

Recommended by Xpopin

<18. 1. 29. 01:17 캡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086217&code=611111111&sid1=pol&cp=nv2>>

② 동아닷컴



<18. 2. 2. 01:59 캡처>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201/88471199/1>

국민일보 동아닷컴은 건강기능식품인 ‘혈케어365’를 광고하면서 그 제목에 「급격히 치솟는 혈당 뚝! 당뇨 100% 완치 가능!!」, 「“복용 후 30일 이면 당뇨, 고혈압 100% 완치!”」라고 달아 마치 당뇨병 환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100% 완치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 위반 광고는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http://www.dbissue.com/html/event/hyulcare/index.html?CD=czoxOdoiNDM0fF98NXxffDE1NTB8X3wwIjs=>>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필 KHSA 심의번호: 2171012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관련법에 의거하여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과하여 제품의 정보에 과장이나 허위광고가 없음을 확인하는 심의필 마크를 얻었습니다.

한/알/에/모/았/다
혈케어 365
정상시 혈당·식후 혈당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 한 알에 모았습니다.

혈당 개선 **혈압 개선** **혈행 개선**

2018년 3월 14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